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제외)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며,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포함)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11.13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수입된 자동차를 막론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이 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중이므로 향후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어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자동차세 부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전>

$$- \text{연세액} : \text{배기량}(2,000\text{cc}) \times \text{cc당 세액}(200\text{원}) = 400,000\text{원}$$

<개정후 2001년 연세액>

- 차령

$$\cdot \text{제1기} : 2001 - 1995 = 6\text{년}$$

$$\cdot \text{제2기} : 2001 - 1995 + 1 = 7\text{년}$$

$$- \text{연세액} : \text{제1기분세액} + \text{제2기분세액} = 350,000\text{원}$$

$$\cdot \text{제1기} : 200,000\text{원}(\text{개정규정이 } 2001.7.1\text{부터 적용되므로 } 20001\text{년 제1기분 세액은 } 200,000\text{원으로 종전과 같음})$$

$$\cdot \text{제2기} : 150,000\text{원} = (400,000/2)-(400,000/2) \times (5/100) \times (7-2)$$

$$\text{※ } 2002\text{년 연세액} : \text{제1기분세액}(\text{차령7년 } 150,000\text{원}) + \text{제2기분세액}(\text{차령8년 } 140,000\text{원}) = 290,000\text{원}$$

○ 기별 구분과세 - 법제196조의6 제1항 개정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으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를 시행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2기분 과세